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6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63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34648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2. 6. 24.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34648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20. 3. 31.경 체결된 1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사천시 E 지상 건물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D이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받은 돈 중 35,3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1246호로 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4.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F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G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 3. 31.경 F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D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시가 4,000,000원 가량의 화물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F 사이에 2000. 4. 13.경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F의 부인 H에게 2018. 2.경부터 2020. 2.경까지 매달 200,000원을 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H는 2020. 4.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20. 4. 18.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완불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이 아닌 피고라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D에 해당하고 D이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